

**학교법인 동서학원**  
**2018학년도 제3차 이사회 회의록**

구 분	이 사	감 사
임원정수	8 인	2 인
제적이사	8 인	2 인
참석이사	7 인	0 인

1. 일 시 : 2018년 6월 28일(목), 오전11:00~12:15,

(회의소집 통보일: 2018년 6월 19일)

2. 장 소 : 법인 회의실

3. 임원 출·결 사항

가. 참석임원

- 이사(7명) : 박동순, 임효진, 김영복, 추만석, 양상백, 오병태, 이순걸
- 감사(0명) :

나. 결석임원

- 이사(1명) : 장제국
- 감사(2명) : 김희규, 김용성

4. 회의안건

(1) 심의안건

- 1) 법인 정관변경(안) 심의 건
- 2) 법인임원(추만석 이사) 임기만료에 따른 후임이사 선임 건
- 3) 동서대학교 “명예퇴직 및 수당지급에 관한 규정” 개정(안) 심의 건
- 4) 2018-2학기 동서대학교 전임교원 재임용(재계약) 심의 건
- 5) 2018-2학기 경남정보대학교 전임교원 재임용(재계약) 심의 건
- 6) 2018-2학기 부산디지털대학교 전임교원 재계약 심의 건

(2) 보고사항

5. 회의내용 :

- (1) 이사장의 사회로 참석인원을 점검한 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회하다.
- (2) 이사장은 오늘 회의안건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한 후 토의 및 결의에 들어가다.

6. 토의 및 결의: 동서대학교 “명예퇴직 및 수당지급에 관한 규정” 개정(안) 심의 건

(1) 이사장은 회의 안건에 관한 사항을 행정실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토록 지시하다.

(2) 행정실장은 동서대학교에서 승인 요청한 “명예퇴직 및 수당지급에 관한 규정” 변경(안)은 사립 학교법 제60조의 3(명예퇴직)의 교원의 명예퇴직수당 지급 조건 및 기타 제반사항을 규정에 명시 코자 한다고 설명하다.

(3) 이사장은 참석한 이사들의 의견 개진을 요청하다.

(4) 양상백이사가 관련 규정을 검토한 후, 본 안건은 상위법에 준하여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 안대로 동의를 하다.

(5) 이순걸이사가 양상백이사의 동의에 재청하니, 임효진이사가 삼청하고 나머지 이사 전원이 찬성 하므로 가결되다.

간서명 대 표	이사장	임 효 진	이사	임 효 진	이사	이 순 걸
------------	-----	-------------	----	-------------	----	-------------

(6) 이사장은 이사들의 다른 의견이 없음을 확인하고, 동서대학교에서 승인 요청한 “명예퇴직 및 수당지급에 관한 규정” 변경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하다.

(7) 이사장은 이사들에게 간서명 대표를 정하자고 하자, 김영복이사가 이사장, 임효진, 이순걸이사를 추천하자 다른 이사 모두가 찬성하므로 가결되다.

7. 폐회 : 이상과 같이 토의 및 결의를 마치고, 임효진이사의 동의로 오후 12시15분에 이사장은 폐회를 선언하다.

위 사실을 확인함.

2018. 6. 28.

학교법인 동서학원 이사회

이사장 박동순

이사 임효진

이사 김영복

이사 추만석

이사 양상백

이사 오병태

이사 이순걸

## 동서대학교 “명예퇴직 및 수당지급에 관한 규정” 변경(안)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u>명예퇴직규정</u>	<u>명예퇴직 및 수당지급에 관한 규정</u>	규정명 변경
제1조(목적) 이 규정은 <u>본 대학교의 명예퇴직에 관한 규정</u>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동서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의 명예퇴직 및 명예퇴직수당에 관한 규정 -----.	자구수정
제2조(명예퇴직) ① 우리 대학교 교직원으로 동서학원 산하에서 10년 이상 근속하고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근속년수 계산은 다음과 같다. 1. - 3. (생략)	제2조(명예퇴직) ① 본 대학교에서 정년을 보장받은 전임교원, 일반직 직원으로 동서학원 소속 기관에서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퇴직일 기준 1년이상 남은 기간 중  ② ----- 1. - 3. (현행과 같음)	자구수정
제3조(명예퇴직의 제한) ① 매학기 명예퇴직 신청 마감일 현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직원에게는 명예퇴직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정계 요구 중에 있는 자  2. - 4. (생략) ② (생략)	제3조(명예퇴직의 제한) ① -----  1. 정계 요구 중에 있는 자 또는 정계처분으로 인하여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2.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자구추가
제4조(명예퇴직수당) ① 명예퇴직 교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수당의 지급액은 명예퇴직자의 퇴직당시 봉급월액에 정년잔여월수를 곱한 금액의 50%로 한다. 단, 정년 잔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잔여월수를 60개월로 한정한다.  ③ 전항의 봉급월액은 본 대학교 교직원보수규정에서 정한 급여액중 본봉만을 기준하며, 정년잔여월수 산정에 있어서 15일 이상은 1월로 하고, 15일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4조(명예퇴직수당) ① -----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표 1>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명예퇴직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별도의 축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③ <삭제>	항 전부개정  항 삭제
<신설>	제4조의2(조기퇴직수당) ① 본 대학교에서 정년을 보장받은 전임교원, 일반직 직원으로 동서학원 소속 기관에서 10년이상 20년미만 근속한 자로서 정년퇴직일 기준 1년 이상 남은 기간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자에게는 심사를 거쳐 예산범위내에서 조기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조기퇴직수당은 <별표 1>에 의해 산정한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조문 신설

간서명 대 표	이사장		이사	임효진	이사	이승경
------------	-----	--	----	-----	----	-----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제12조(수당지급시기) 수당은 퇴직금 지급과 동시에 지급 한다.	제12조(수당지급시기) 수당은 명예퇴직일로부터 5일 이내에 일시불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자구수정
제13조(수당의 수령권자) 수당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에게 직접 지급한다.	제13조(수당의 수령권자) 수당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에게 직접 지급한다. 다만 부득이 하게 본인에게 지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단서 추가
<신설>	제13조의2(명예퇴직자의 예우) 명예퇴직 교직원은 정년퇴직 교직원과 동등한 예우를 한다.	조문 신설
제14조(사무관장) 명예퇴직에 관한 사무는 예산인사팀장이 관장한다.	제14조(사무관장) ————— 인사평가처에서 관장한다.	자구수정
제15조(시행규칙) 명예퇴직에 관한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5조(시행규칙) ————— 정할 수 있다.	자구수정

#### [별표 1] 신설

명예퇴직수당 지급액 산정표

정년 여기간별	산정 기준
1년 이상 5년 이내인 자	퇴직당시 봉급월액의 5할×정년잔여월수
5년 초과 10년 이내인 자	퇴직당시 봉급월액의 5할×(60+(정년잔여월수-60)/2)
10년 초과인 자	정년잔여기간이 10년인 자의 금액과 동일한 금액

- 봉급월액은 본 대학교 보수규정에서 정한 급여액 중 봉급만을 기준하며, 정년잔여월수 산정에 있어서 15일 이상은 1월로 하고, 15일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간서명 대 표	이사장		이사	이효진	이사	이승걸
------------	-----	--	----	-----	----	-----